

## “영주권자 신분변경 신청시, 불법체류신분 극복사례”

미국내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시, 합법적인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않는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거의 어려우며,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외 대사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3 년 내지 10 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 245 항은 이러한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불법고용이나 불법체류,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미국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변경이 금지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의 몇가지 예외사항을 허락함으로써, 불법체류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친지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의 후원을 받는 배우자, 미성년자, 부모는 가까운 친지로서, 불법체류신분 또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미국내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불법입국을 한 친지의 경우는 이 예외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적인 예외 (No Fault or Technical Exceptions)

제 245 항은 또한 자신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through no fault of his own or for technical reasons)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해석되며, 구체적인 예외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직원이나 교환학생프로그램 책임자가 신분유지 통보나 신분유지요청을 이민국에 하지 않은 경우, 비시민권자 학생은 불법체류신분이 되지만, 이 조항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는, 비시민권자가 늦지 않게 신분요청을 했지만, 이민국의 능력이나 실수로 신분유지가 안된 경우도 기술적인 예외로서 적용됩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어떤 간호사들의 경우, 비자 만기가 되어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예외사항으로 규정,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좁은 법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이민법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민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중에는, 비시민권자가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해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언을 수임한 변호사에게서 듣지 못한채,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다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변호사를 수임, 제 245 항의 예외사항을 들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못한 것이 비시민권자의 잘못이 아니며, 수임한 변호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예외사항(No Fault or Technical Exceptions)은 그 구체적인 정의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않습다만, 법의 해석의 확장과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논증한다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법입니다.

### **사면 (Waiver)**

제 245 항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고용에도 불구하고 1000 불의 신청비와 함께 제 204 항에 근거한 청원이나 노동허가서를 2001 년 4 월 30 일까지 신청하였고, 2000 년 12 월 21 일까지 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한해 사면을 허락합니다.

또한, 1,2,3 순위 근로자 또는 종교 근로자가 취업을 근거로 한 청원을 한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기간, 불법고용기간 또는 입국조건 위반등을 위반한 기간이 180 일이 넘지 않은 경우, 사면을 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3 년 내지 10 년의 미국 입국금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과 떨어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 호소,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건강, 재정, 교육, 개인적인 고려사항 등 구체적으로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사례일지라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가족간의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자녀의 교육권 등을 배려한 선한 의도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이민법 역시 법이 규정하는 범위 외에 예외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사례들마다 공의롭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 입법적인 의도입니다. 법의 일반적인 법칙에는 늘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고 비자, 영주권 수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617)877-3435

웹사이트: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